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1670호(號) 1932(昭和 7)년 8월 1일 월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419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 1932(昭和 7)년 8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6호(號)에 의(依)한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2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은 이것을 폐지(廢止)함.

1932(昭和 7)년 8월 1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제1조(條) 하송인(荷送人)은 본(本) 규정(規程)의 정(定)한 바에 의(依)하여 그 탁송(託送)과 관계(關係)된 하물(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을 말함. 이하[以下] 동일[同一])에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청구(請求)함을 득(得)함. 단(但)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화물(荷物)은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1. 신문지(新聞紙)
2. 선어(鮮魚)·새우[介蝦] 류(類), 동물(動物), 선육(鮮肉), 잠종(蠶種) 기타(其他) 부패(腐敗)·변질(變質)하기 쉬운 것 또는 죽어서 썩을 염려(念慮)가 유(有)한 것
3. 위험품(危險品)
4.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것

제2조(條) 상환대금액(相換代金額)은 1구(口)당(當) 소하물(小荷物)에 있어서는 금(金) 1원(圓) 이상(以上) 2천원(千圓) 이하(以下), 화물(貨物)에 있어서는 금(金) 5원(圓) 이상(以上) 2천원(千圓) 이하(以下)로 하고, 1전(錢) 단위(單位) 미만(未滿)의 단수(端數) 없는 것에 한(限)함.

제3조(條) 대금상환(代金相換)은 특(特)히 정(定)한 경우를 제(除)하고 아래[左]의 역소(驛所: 이하[以下] 간단히[單] 역[驛]이라 칭[稱]함)에 탁송(託送)한 화물(荷物)로서 조선국유철도선(朝鮮國有鐵道線) 각(各) 역착(驛著: 간이역착[簡易驛著] 및 항로[航路] 경유[經由]의 것을 제[除]함)의 것에 한(限)하여 취급(取扱)을 하는 것으로 함.

부산(釜山), 초량(草梁), 부산진(釜山鎭), 대구(大邱), 왜관(倭館), 김천(金泉), 대전(大田), 조치원(鳥致院), 천안(天安), 평택(平澤), 수원(水原), 영등포(永登浦), 용산(龍山), 경성(京城), 상인천(上仁川), 인천(仁川), 개성(開城), 남천(南川), 신막(新幕), 서흥(瑞興), 사리원(沙里院), 황해황주(黃海黃州), 평양(平壤), 서평양(西平壤), 신안주(新安州), 정주(定州), 선천(宣川), 신의주(新義州),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선교리(船橋里), 진남포(鎭南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논산(論山), 강경(江景), 이리(裡里), 김제(金堤), 정읍(井邑), 송

정리(松汀里), 나주(羅州), 영산포(榮山浦), 목포(木浦), 군산(群山), 왕십리(往十里), 청량리(淸凉里), 철원(鐵原), 세포(洗浦), 갈마(葛麻), 원산(元山), 함흥(咸興), 성진(城津), 청진(淸津), 나남(羅南), 회령(會寧), 북청(北靑), 구마산(舊馬山), 마산(馬山), 진주(晉州), 전주(全州), 담양(潭陽), 전남광주(全南光州), 포항(浦項)

제4조(條) 대금상환화물(代金相換貨物)을 접수(接受)한 때는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을 하송인(荷送人)에게 교부(交付)하는 것으로 함.

제5조(條) 대금상환화물(代金相換貨物)로서 배달부(配達付)의 것은 배달(配達) 이전(以前)에, 역류(驛留)의 것은 착역(著驛)에서, 이것을 인도(引渡)할 때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대금(代金)을 수수(收受)함. 단(但) 배달부(配達付)의 것이라 해도 하주(荷主)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할만한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배달(配達) 이전(以前)에 상환(相換)을 하는 것이 능(能)하지 아니한 때는 역류(驛留)의 것의 예(例)에 의(依)함.

대금상환화물(代金相換貨物)을 하주(荷主)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할만한 사유(事由)에 의(依)하여 그 도착통지(到着通知)를 발(發)한 날[日]의 익일(翌日) 또는 송달처(送達處)에서 인도(引渡)를 해야 할 날[日]의 익일(翌日)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소하물(小荷物)에 있어서는 10일(日), 화물(貨物)에 있어서는 20일(日)을 경과(經過)하여도 대금(代金)과의 상환(相換)을 하는 것이 능(能)하지 아니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의 비용(費用)으로 발역(發驛)으로 송환(送還)해야 함.

제6조(條)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상환대금(相換代金)을 수수(收受)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에 대하여 발역(發驛)에서 그 취지(趣旨)를 통지(通知)하고 발역(發驛)에서 이것을 지불(支拂)을 함.

제7조(條) 하송인(荷送人)은 전조(前條)의 통지(通知)를 받은 때는 상환대금(相換代金)의 지불시간(支拂時間) 내(內)에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을 제출(提出)하고 이것과 상환(相換)으로 발역(發驛)에서 대금(代金)을 수취(收取)하는 것으로 함.

전항(前項)의 상환대금(相換代金)의 지불시간(支拂時間)은 특(特)히 정(定)한 경우를 제(除)하고 오전(午前) 8시(時)부터 오후(午後) 4세(世)까지로 함.

제8조(條) 전조(前條)의 경우 하송인(荷送人)이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을 제출(提出)하기 어려운 때는 그 요령(要領)을 기재(記載)한 보증서(保證書: 보증인연서[保證人連署])를 제출(提出)해야 하는 것으로 함.

전항(前項)의 보증서(保證書)는 아래[左]의 문례(文例)에 의(依)하는 것으로 함.

삼전수입인지 (參錢收入印紙) 보 증 서(保證書) 일(一) 금(金) 정(整) 단(但) 소화(昭和) 년(年) 월(月) 일(日) 역(驛) (소[所]) 발행(發行)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 제(第) 호(號)에 대한 상환대금액(相換代金額)

위[右]는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 을 위하여 본서(本書)로 상기[前記] 금액을 영수(領收)한 경우에 대하여는 금후(今後) 당해(當該) 증(證)을 제출(提出)하지 아니함으로 인(因)하여 발생(發生)한 일체(一切)의 피해(被害)는 본인[拙者] 및 보증인(保證人)이 연대(連帶)하여 그 책임(責任)을 부담(負擔)하고, 귀국(貴局)에 대하여는 추호(秋毫)도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함. 소화(昭和) 년(年) 월(月) 일(日) 현주소(現住所) 하송인(荷送人) 성 명(姓名) 인(印) 현주소(現住所) 보증인(保證人) 성 명(姓名) 인(印) 조선총독부 철도국장(朝鮮總督府鐵道局長) 전(殿)

제9조(條) 하송인(荷送人)은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수취[收取]의 경우는 소하물표[小荷物表] 또는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을 발역(發驛)에 정시(呈示)하여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수취(收取), 취소(取消) 또는 상환대금(相換代金)의 증액(增額), 감액(減額)을 청구(請求)하는 것을 득(得)함. 단(但)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수취(收取) 또는 상환대금(相換代金)의 증액(增額)은 하물(荷物) 및 관계서류(關係書類) 발송(發送) 전(前)에 한(限)함.

제10조(條) 대금상환하물(代金相換荷物)의 처분(處分) 또는 변경(變更: 화물[貨物]에 있어서는 지도[指圖])은 발역(發驛)에 청구(請求)하는 것으로 함.

제11조(條) 대금상환(代金相換)에 관(關)한 수수료(手數料)는 아래[左]와 같이 함. 단(但) 제2호(號)의 수수료(手數料)는 하주(荷主)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하지 아니한 사유(事由)로 인(因)한 경우 또는 하물(荷物)의 처분(處分) 및 변경(變更: 화물[貨物]에 있어서는 지도[指圖])과 동시(同時)에 청구(請求)가 있는 경우는 이것을 수수(收受)하지 아니함.

1 대금상환수수료(代金相換手數料)

상환대금액(相換代金額)	20원(圓)까지	금(金) 10전(錢)
동(同)	30원(圓)까지	금(金) 13전(錢)
동(同)	50원(圓)까지	금(金) 20전(錢)
동(同)	100원(圓)까지	금(金) 27전(錢)
100원(圓)을 초과(超過)한 것은		
100원(圓)까지를 증가(增加)할 때마다		금(金) 10전(錢)

2 상환대금(相換代金)의 증액(增額), 감액(減額) 또는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소(取消), 수수료(手數料)

하물(荷物) 및 관계서류(關係書類) 발송(發送) 전(前)	1회(回)당(當)	금(金) 10전(錢)
하물(荷物) 및 관계서류(關係書類) 발송(發送) 후(後)	동(同)	금(金) 15전(錢)

제12조(條) 전조(前條)의 요금(料金)은 신청(申請)을 받을 때 이것을 수수(收受)함. 단(但)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이 착불(著拂) 또는 후불(後拂)인 때는 착불(著拂) 또는 후불(後拂)로 하는 것을 득(得)함.

전조(前條)의 요금(料金)은 일단(一旦) 수수(收受)의 수속(手續)을 한 후(後)라도 하주(荷

主)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되지 아니한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대금상환(代金相換)의 목적(目的)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그 전액(全額)을 환급(還給)함.

제13조(條)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소(取消) 또는 상환대금(相換代金)의 감액(減額)의 청구(請求)가 있는 경우는 이미 요구(要求)한 보관료(保管料) 및 화차유치료(貨車留置料)는 그 청구(請求)에 응(應)할 때 청구자(請求者)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단(但) 하수인(荷受人)이 특(特)히 승낙(承諾)한 때 또는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이 착불(著拂)인 때는 하물인도(荷物引渡) 때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수수(收受)하고, 또 후불(後拂)의 계약(契約)이 있을 때는 후불(後拂)로 하는 것을 득(得)함.

전항(前項) 경우 청구자(請求者)로부터 수수(收受)하는 요금(料金)의 계산기간(計算期間)은 하수인(荷受人)에 대하여 도착통지(到着通知)를 발(發)한 때는 그 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한 때는 하물(荷物)이 착역(著驛)에 도착(到着)한 때 또는 배달(配達)에 부친 때부터 기산(起算)하여 철도(鐵道)에서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로써 종료(終了)함.